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9. 1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9월 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9월 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5. 9.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 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
- 생활임금 심의기구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을 정함.
(안 제4조~제6조)
-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반영 기관(업체)에 대한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 임금제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를 영등포구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015.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60%인 15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7개구는 입법예고, 1개구는 상정 예정이며, 2개구가 미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세부내역 따로 붙임)
-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를 비롯한 5개구에서 2015년도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중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5,580원의 120% 내외인 6,687원부터 7,150원까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음.

기관명	생활임금액	기관명	생활임금액
서울시	6,687원	도봉구	6,850원
노원구	7,150원	구로구	6,687원
성북구	7,150원	종로구	6,737원

-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조문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의 장려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생활임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구청 직접고용 근로자 189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명, 총 419명에 대한 생활임금 예산으로 5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구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다만,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2호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제3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관 및 업체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액을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생활임금액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문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고루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는 등 생활임금 주요사항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생활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관주도의 강제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함.

- 1) 제6조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의

“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를 삭제하며,

○ 안 제3조제3호의

“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삭제하고,

○ 안 제6조제4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로,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로 한다.

○ 안 제9조제2항 중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한
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5
----------	----------

제안년월일 : 2015. 9.

제 출 자 : 허홍석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생활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관주도의 강제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의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를 삭제하며,
- 안 제3조제3호의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삭제하고,
- 안 제6조제4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로 한다.
- 안 제9조제2항 중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며,
-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 안 제6조제4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로 한다.
- 안 제9조 제2항 중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생활임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하수급인</u>"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p> <p>1. 2. (원안과 같음)</p> <p>3. (삭제)</p>
<p>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1. 2. (생략)</p> <p>3. <u>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u></p>	<p>제3조(적용대상) -----</p> <p>-----</p> <p>-----</p> <p>-----</p> <p>1. 2 (원안과 같음)</p> <p>3. (삭제)</p>
<p>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u> 개의하고 <u>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u> 의결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원안과 같음)</p> <p>④ -- <u>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u> ----- <u>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u> -----</p> <p>-----</p> <p>⑤ ~ ⑦ (원안과 같음)</p>
<p>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u>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원안과 같음)</p> <p>② -----</p> <p>-----</p> <p>----- <u>체결할 수 있다.</u></p> <p>③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5 호
----------	--------

제출연월일 : 2015.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

-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직접 고용한 근로자

다. 생활임금 심의기구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을 정함
(안 제4조~제6조)

라.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반영 기관(업체)에 대한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있음)

-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해촉요건을 구체적 명기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권고 (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8. 06 ~ 8. 26,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영등포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청렴성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면직 또는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하는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생활임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세출예산 순증가(인건비) 조례 제8조 제1항
 2. 비용추계 기준 :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액 시급 6,687원 월액 1,397,583원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생활임금도입 연간소요액(2015년도 기준)
- ※ 임금기준 : 기본급 + 교통비 + 급식비 + 수당(연장근로수당제외)
- ※ 적용대상 : 구직접채용 근로자(189명),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230명)

사업명 (부서명)	생활임금 ①(원)	실제임금 ②(원)	부족액 ①-②(원)	소요액 (천원)	산출기초 (인원×근무일수×부족액)
합계				411,883	
대체인력운영 (총무과)	53,496	48,000	5,496	75,845	46명×300일×5,496원
대림운동장유지관리 (문화체육과)	53,496	46,357	7,139	5,568	3명×260일×7,139원
안양천도림천체육시설관리 (문화체육과)	53,496	46,357	7,139	7,425	4명×260일×7,139원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복지과)	33,435	30,900	2,535	9,241	10명×303일×2,535원
무단투기단속 및 관리 (청소과)	53,496	53,357	139	2,317	6명×260일×139원
공원시설물정비관리 (푸른도시과)	53,496	46,357	7,139	46,404	25명×260일×7,139원
공원공중화장실관리 (푸른도시과)	53,496	46,357	7,139	17,248	8명×302일×7,139원
자연생태공원유지관리 (푸른도시과)	53,496	49,717	3,779	3,567	4명×236일×3,779원
안양천도림천유지관리 (푸른도시과)	53,496	46,357	7,139	25,986	14명×260일×7,139원
도로유지관리 (도로과)	1,397,583	1,335,000	62,583	2,253	4명×9월×62,583원
빗물받이준설 (안전치수과)	53,496	50,000	3,496	3,398	12명×81일×3,496원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안전치수과)	53,496	50,000	3,496	3,398	4명×243일×3,496원
수방대책및준설운영관리 (안전치수과)	53,496	50,000	3,496	1,398	4명×100일×3,496원
하천및유수지관리 (안전치수과)	53,496	50,000	3,496	2,098	3명×200일×3,496원
교통유발부담금및기업체교 통수요관리(교통행정과)	1,397,583	1,372,000	25,583	947	37명×1월×25,583원
건축물부설주차장전수 조사(주차문화과)	53,496	46,790	6,706	5,432	5명×162일×6,706원
주차관리, 스포츠센터관리 등 (시설관리공단)	1,397,583	1,327,760 (평균임금)	69,823 (평균금액)	185,171	221명×12월×69,823원
주차관리, 도서관관리 등 (문화재단)	1,397,583	1,266,220	131,363	14,187	9명×12월×131,363원

(뒤 쪽)

4. 비용추계 결과

- 2016년부터 생활임금 보전 연간 추계액은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 반영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는 인상률을 고려하여 임금보전액의 11%로 산정
 - 2015년 기준 사업주 4대보험 부담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3.234%, 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기금 포함)료 0.98%, 산재보험 (예, 지방자치단체 행정요율) 0.9% 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							
	소계(a)							
세출	임금보전액	444,833	480,419	518,852	560,360	605,188	2,609,652	
	4대보험료 (사용자분)	48,931	52,846	57,073	61,639	66,570	287,059	
	소계(b)	493,764	533,265	575,925	621,999	671,758	2,896,711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493,764	533,265	575,925	621,999	671,758	2,896,711	
합계								

6. 추가의견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윤무주
연락처	02-2670-4158